

# 검토보고서

안건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세무1과	1

( 2012. 11. 28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2년 11월 22일

나. 의안번호 : 12-94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## [검토보고]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(아케이드)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세인 「재산세과세특례」 및 「지역자원시설세」 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면제됨에 따라 구세인, 「재산세」에 대한 면제 연한(5년)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6조 중 “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를 “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로 변경함.

### < 검토의견 >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. 7. 30.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(아케이드)에 대한 「재산세과세특례(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)」 및 「지역자원시설세」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(제11조)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고,

각 자치구에 통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 망원시장, 망원월드컵시장 2곳에 대한 면제연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